

의안번호	제68호
의결연월일	2020. 6. 22.

_____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____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6월 15일 구본선 의원 외 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2020년 6월 2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구본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논산시의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7조의 제목 변경
 -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⇒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
-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(안 제7조)
 -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에 한정하여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군부대 및 육군훈련소 헌혈자는 제외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